

서기 2019년 11월 25일

## 감사위원회 규정

(주)LS네트웍스

# 감사위원회 규정

2016년 3월 25일 제정  
2019년 11월 25일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3조(직무와 권한)**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② 위원회는 제①항의 감사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때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변경,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.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변경 선임 또는 선정하거나, 이미 선정된 외부감사인이 감사연도 중 해산 등의 이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⑥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⑦ 위원회는 상기 사항 이외에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.

⑧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.

1.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받는다.
  2.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, 예상감사시간, 징계여부, 감사인 선임을 위한 대면 회의 결과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외부감사인후보 평가 양식은 [별표1]과 같다.
  3.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, 선임후에는 해당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⑨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할 수 있고,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만나서 감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.

**제4조(의무)**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위원회는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
**제5조(구성)**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경영기획팀장이 되며,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.

**제6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이사회, 주주, 채권자,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위원회는 년4회 개최한다.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**제8조(소집권자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위원장이 유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 제③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9조(소집절차)**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, 그 12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0조(결의방법)**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·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

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부의사항)**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감사에 관한 사항
  - 가. 상법 제412조의 2에 의한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
  - 나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
  - 다. 감사록 작성
  - 라.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
  - 마.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
3.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
4. 제출에 관한 사항
  - 가. 감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 및 제출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
5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사항
6.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, 정관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2조(의사록)**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제 3 장 감사결과 보고

**제13조(감사록의 작성)**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감사보고서의 작성 · 제출)**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 등을 기초로 하여 충분한 검토 및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상기 제①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,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-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 15조(주주총회에의 보고 등)**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
**제 16조 (재무감사 전담자)** ①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할 시 이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 또는 내부감사 전담자를 둘 수 있다.

② 내부감사부서를 둘 경우 책임장은 재무관련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**제 17조 (중요 회의에의 출석)**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과정,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**제 18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 감사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 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 2조(준용규정)**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규정 및 규정은 상법 및 기타 법령과 및 내부규정인 “감사규정” 등에 의한다.

## 부 칙

**제 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 (단,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외감법”) 시행일(2018년 11월 1일)이후 이 규정의 개정일 사이의 기간에는 관계된 외감법을 적용한다.)

[별표1]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

구분	평가 항목 및 배점(100점)					
가. 입찰가격	<u>10</u>					
나. 감사품질	<u>90</u>	(1) 감사업무 수행팀 역량	40	감사담당자의 경험	15	
				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	13	
				파트너의 업무부담	3	
				매니저 및 스태프의 업무부담	6	
				징계	3	
		소계				<b>40</b>
		(2) 회계법인의 역량	20	내부품질관리	10	
				독립성 및 법규준수	5	
				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	5	
		소계				<b>20</b>
		(3)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	30	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	15	
				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관여도	6	
				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	5	
				전문가 활용	2	
				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	2	
소계				<b>30</b>		
<b>총계 (가+나)</b>					<b><u>100</u></b>	